■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2.6.8>

HRD-NET시스템(www.hrd.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신청내용	자격증 신청직종	교사의 등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지청장·출장소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각 훈련과정 이수증 사본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 중 아래 ※란에 명칭을 기입한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 × 3㎝) 1장	수수료 2,000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위 ※란에 기재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처 리	발 급 여 부		[ ] 발급 [ ] 미발급			등 급	
	미 발 급 사 유						
결 재	담당자		검토자		부서장		결 재 일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고용센터)	→	검 토 (고용센터)	→	결 재 (담당부서장)	→	통 보

210㎜×297㎜[백상지 80g/㎡]